

표준 후견계약서①(현재형 · 장래형)

## 후견계약서

계약체결일 : 20○년 ○월 ○일

위임인 성명 : ○○○ (\*\*\*\*\*-\*\*\*\*\*)인

(사건본인) 등록기준지 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\*\*

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, ○동 ○호(○○동, ○아파트)

직업 : ○○업

수임인 성명 : ○○○인

(임의후견인) 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, ○동 ○호(○○동, ○아파트)

사무소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\*\*

직업 : 법무사

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후견계약을 작성한다.

－ 아래 －

제1조(목적) 위임인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임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(이하 「후견사무」라 한다)를 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.

제2조(후견계약의 효력 발생) ① 이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위임인이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수임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인은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하고, 위임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.

제3조(후견사무의 범위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별지 「대리권등록록」에 기재한 후견사무를 위임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.

제4조(본인의 복리와 의사준중) ① 수임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임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위임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용의 부담) ① 수임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.

제6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수임인에게 후견사무의 처리에 대한 보수로 매월 말일 금 ○○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수액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위임인의 생활상황 또는 건강상태의 변화

2. 경제 사정의 변동

3. 그 밖에 제1항의 보수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정의 발생

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후견사무가 부동산의 처분, 후견사무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, 소송 및 비송절차의 수행, 그 밖에 통상의 재산관리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제1항에서 정한 보수와는 별도로 추가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추가보수액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임의후견감독인과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위임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후견계약의 종료) ①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
②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.

1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

2. 수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

3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성년후견·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

4. 수임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인 해임심판을 받은 때

④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지체없이 그 뜻을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계약의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보제공의 동의)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후견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.

제9조( ) <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조항을 추가 가능 수 있음>

[별지] 대리권등 목록<작성례>

## 대리권등 목록

### [대리권목록]

#### 1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##### 가. 부동산의 관리·보존·처분

- (1) 부동산의 처분 및 구입
- (2) 임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
- (3)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
- (4) 부동산의 신축·증축·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·종료

##### 나.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

##### 다. 보험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험금의 수령

##### 라.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

- (1) 정기적 수입(임료, 연금, 사회보장급여 등)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
- (2) 정기적 지출(임료, 요금, 보험료, 대출원리금 등)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
- (3)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 절차

##### 마. 상속의 승인,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양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

##### 바. 물품의 구입·판매,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

##### 사. 유체동산,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

##### 아. 공법상의 행위(세무신고 등)

##### 자. 근로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임금의 수령

##### 차. 금전, 유체동산 등의 차용·대여·증여

##### 카. 보증행위

#### 2.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

##### 가.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

- (1)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- (2) 복지시설·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##### 나.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##### 다. 공법상의 행위(주민등록, 공적 의료보험,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)

##### 라.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

##### 마. 거주·이전, 면접교섭, 우편·통신에 관한 결정

#### 3. 그 밖의 사항

##### 가.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

##### 나.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

#### 4.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

##### 가.

##### 나.

### [권한의 행사 및 분장에 관한 사항](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한 경우)

대리권목록에서 정한 권한을 후견인들이 (각자 공동으로) 행사함.

대리권목록에서 정한 권한을 다음과 같이 후견인별로 분장함.

가.

나.

## 표준 후견계약서②(전환형)

# 위임계약 및 후견계약서

계약체결일 : 20○년 ○월 ○일

위임인 성명 : ○○○ (\*\*\*\*\*-\*\*\*\*\*)

인

(사건본인) 등록기준지 : ○○도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\*\*

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, ○동 ○호(○○동, ○아파트)

직업 : ○○업

수임인 성명 : ○○○

인

(임의후견인) 주소 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\*\*, ○동 ○호(○○동, ○아파트)

사무소 : 서울특별시 ○○구 ○○로 \*\*

직업 : 법무사

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임계약 및 후견계약을 작성한다.

－ 아래 －

## 제1장 위임계약

제1조(목적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(이하 「위임사무」라 한다)를 위임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.

제2조(후견계약과의 관계) ① 이 위임계약 체결 후 위임인이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 수임인이 제2장의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인은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② 이 위임계약은 제2장의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종료한다.

제3조(위임사무의 범위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별지 1의 「대리권목록(위임계약)」에 기재한 위임사무를 위임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.

제4조(비용의 부담) ①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.

제5조(보수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한 보수로 매월 말일 금 ○○○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제6조(보고) ① 수임인은 ○개월마다 위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임인은 언제든지 수임인에게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7조(위임계약의 변경) 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와 대리권의 범위를 변경하는 계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위임계약의 종료) ① 위임인과 수임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이 위임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
② 이 위임계약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당연히 종료한다.

1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
2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
3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성년후견·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

제9조(정보제공의 동의)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위임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.

## 제2장 후견계약

제1조(목적) 위임인은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위임인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(이하 「후견사무」라 한다)를 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수임인은 이를 수임한다.

제2조(후견계약의 효력 발생) ① 이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위임인이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러 수임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인은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수임인은 우선적으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를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하고, 위임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.

제3조(후견사무의 범위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별지 2의 「대리권등록(후견계약)」에 기재한 후견사무를 위임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.

제4조(본인의 복리와 의사존중) ① 수임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임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수임인은 위임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위임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5조(비용의 부담) ① 수임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위임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.

제6조(보수) ① 위임인은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수임인에게 후견사무의 처리에 대한 보수로 매월 말일 금 ○○원을 지급하기로 하고, 수임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위임인의 재산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보수액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1. 위임인의 생활상황 또는 건강상태의 변화

2. 경제 사정의 변동

3. 그 밖에 제1항의 보수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특별한 사정의 발생

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④ 후견사무가 부동산의 처분, 후견사무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, 소송 및 비송절차의 수행, 그 밖에 통상의 재산관리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제1항에서 정한 보수와는 별도로 추가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추가보수액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임의후견감독인과 협의하여 정한다. 다만, 위임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후견계약의 종료) ①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이 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
②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.

1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의 사망

2. 수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

3.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성년후견·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

4. 수임인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임의후견인 해임심판을 받은 때

④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임인 또는 수임인은 지체없이 그 뜻을 임의후견감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수임인은 위임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견계약의 종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보제공의 동의) 위임인은 수임인이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후견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다.

제9조( ) <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>

[별지 1] 대리권목록(위임계약)<작성례>

## 대리권목록(위임계약)

### 1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#### 가. 부동산의 관리·보존·처분

- (1) 부동산의 처분 및 구입
- (2) 임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
- (3)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
- (4) 부동산의 신축·증축·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·종료

#### 나.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

#### 다. 보험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험금의 수령

#### 라.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

#### 마. 상속의 승인,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양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

#### 바. 물품의 구입·판매,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

#### 사. 유체동산,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

#### 아. 공법상의 행위(세무신고 등)

#### 자. 근로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임금의 수령

#### 차. 금전, 유체동산 등의 차용·대여·증여

#### 카. 보증행위

### 2.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

#### 가.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

#### 나.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#### 다. 공법상의 행위(주민등록, 공적 의료보험,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)

### 3. 그 밖의 사항

#### 가.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

#### 나.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

#### 다. 기타사항

[별지 2] 대리권등 목록(후견계약)<작성례>

## 대리권등 목록(후견계약)

### [대리권목록]

#### 1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
가. 부동산의 관리·보존·처분

(1) 부동산의 처분 및 구입

(2) 임대차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

(3)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

(4) 부동산의 신축·증축·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·종료

나.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

다. 보험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보험금의 수령

라.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

(1) 정기적 수입(임료, 연금, 사회보장급여 등)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

(2) 정기적 지출(임료, 요금, 보험료, 대출원리금 등)과 이에 관한 제반 절차

(3)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 절차

마. 상속의 승인,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양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

바. 물품의 구입·판매,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

사. 유체동산,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

아. 공법상의 행위(세무신고 등)

자. 근로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, 임금의 수령

차. 금전, 유체동산 등의 차용·대여·증여

카. 보증행위

#### 2.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

가.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

(1)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(2) 복지시설·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나.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종료 및 비용의 지급

다. 공법상의 행위(주민등록, 공적 의료보험,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)

라.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

마. 거주·이전, 면접교섭, 우편·통신에 관한 결정

#### 3. 그 밖의 사항

가.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처리

나.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

#### 4. 임의후견감독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

가.

나.

### [권한의 행사 및 분장에 관한 사항](후견인을 2명 이상 선임한 경우)

대리권목록에서 정한 권한을 후견인들이 (각자 공동으로) 행사함.

대리권목록에서 정한 권한을 다음과 같이 후견인별로 분장함.

가.

나.